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압수품 관리에 관한**보건부 규정**

불기 2567년(서기 2024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압수 또는 몰수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보건부 장관은 2015년 화장품법 제5조 첫번째 단락, 제50조 및 제51조 두번째 단락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본 규정은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압수품 관리에 관한 보건부 규정(불기 2567년(서기 2024년))이라 칭한다.

제2조 본 규정은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60일 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압수품"이란 담당 공무원이 제47조 제3항에 따라 압수 또는 몰수한 물품을 의미한다.

"중앙위원회"란 식품의약품청이 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한 위원회를 의미한다.

"주위원회"란 방콕시를 제외한 각 주의 주지사가 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보건부 차관이 본 규정의 집행을 책임지며, 본 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는다.

제1장**위원회**

제5조 청장이 임명한 중앙위원회가 압수품을 심사한다. 중앙위원회는 식품의약품청의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화장품 및 유해물질 관리과장 및 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기타 위원들로 구성한다.

화장품 및 유해물질 관리과 산하 법 감독 및 집행 부서장을 위원 겸 간사로 임명한다.

제6조 주위원회는 압수품 심사를 위해 주지사가 임명한다. 주위원회는 주 공중보건국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주 공중보건국 산하 소비자보호 및 의약품 공중보건 부서장 및 주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기타 위원들로 구성한다.

주 공중보건국 국장은 압수품 담당 주 공중보건국 소속 직원을 위원회 위원 겸 간사로 임명한다.

제2장**압수물 수령**

제7조 청장 또는 주지사는 수령하여 보관할 모든 압수품과 관련하여 압수품 검사 지침을 수립한다. 필요할 경우 압수품을 보관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팀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보관

제8조 모든 압수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1) 식품의약품청 관할의 압수품은 식품의약품청 또는 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장소에 보관한다.

(2) 주 관할의 압수품은 해당 주의 경찰서 또는 주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장소에 보관한다.

청장 또는 주지사는 압수품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장

압수품 활용

제9조 보건부 소유의 압수품 중 공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식품의약품청 관할의 압수품은 중앙위원회가 공무용 사용 방안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청장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주 관할의 압수품은 주위원회가 공무용 사용 방안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지사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압수품 중 정부 업무용으로 승인된 물품은 공공조달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5장

처분 및 경매

제10조 보건부 소유의 압수품 중 공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판매는 가능한 물품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식품의약품청 관할의 압수품은 중앙위원회가 판매 방안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청장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주 관할의 압수품은 주지사가 판매 방안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판매 승인을 받은 압수품은 공공조달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수행한다.

판매 수익금은 국가 세입으로 재무부에 귀속한다.

제11조 제51조 첫번째 단락에 따른 압수품의 경매는 다음의 방법과 조건으로 실시한다.

(1) 담당 공무원은 경매 대상 압수품 목록을 작성하고, 청장은 경매 대상 압수품 목록과 경매 일시와 장소, 경매 조건 및 방법을 공표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경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2) 압수품을 압수 또는 몰수한 공무원은 경매에 참여하거나, 타인에게 입찰을 위임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경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6장

폐기

제12조 보건부 소유의 압수품 중 공무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식품의약품청 관할의 압수품은 중앙위원회가 폐기 방안을 검토한 후 청장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주 관할의 압수품은 주위원회가 폐기 방안을 검토한 후 주지사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폐기 승인을 받은 압수품은 중앙위원회 또는 주위원회가 압수품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7장

보고

제13조 중앙위원회 또는 주위원회가 압수품을 공적 사용, 처분, 경매 또는 폐기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위원회는 즉시 청장 또는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 규정

제14조 마약류 이외 압수품 보관에 관한 보건부 규정(불기 2521년(서기 1978년))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해야 한다.

2024년 7월 9일 공고

씀싹 텁수틴

보건부 장관